포항시 식품 등 시험·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8월 31일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9월 1일

다. 상정일자

❍ 제33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

•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(2026. 9. 11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구광회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)

가. 개정이유

❍ 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시험·검사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제외된 비브리오 패혈증과 비브리오 콜레라 검사의 수수료를 명시하여 지역 수산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.

❍ 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의뢰인이 요구할 수 있게 하여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수행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[별표 2] 시험·검사 수수료

- 추가 : 비브리오 패혈증(정성, n=1) 35,700원
- 추가 : 비브리오 콜레라(정성, n=1) 35,700원

❍ 별지 제1호서식

- 성적서 통보방법

(기존) 의뢰인 주소, 기타 → (개정) 우편, 전자문서, 기타

다. 관계법령

❍ 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11조제2항

❍ 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」 제2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종율)

❍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수행하고 있는 비브리오 패혈증 및 비브리오 콜레라 검사에 대해, 현행 조례상 5개 시료(n=5) 수수료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여 1개 시료(n=1) 검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각 35,700원의 수수료를 신설하고, 시험·검사성적서의 통보방법에 전자문서를 추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❍ 검토결과, 기존 검사 업무에 대한 1개 시료 검사 수요를 반영하여 수수료 체계를 보완하고, 시험·검사성적서의 전자문서 통보를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실제 검사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❍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